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5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이해민 · 김준형 · 강경숙
황운하 · 이학영 · 정춘생
서왕진 · 조인철 · 이정현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을 “지정을 받은 날, 등록한 날 또는 확인받은 날”로 한다.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보유
· 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2028년 12월 31일-----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

② -----

-----지정을 받은

날, 등록된 날 또는 확인받은

날-----

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⑩ (생 략)	-----, ----- ----- -----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	--